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시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 기준을 정비하고, 조직관리
전산화 근거를 마련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 인구 기준에 외국인 수 포함(안 제7조)

인구 기준 관련 법령의 일관성¹⁾, 외국인 주민 대상 행정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실·국 설치 기준에 적용하는 인구 수에 외국
국적동포, 등록외국인 수도 포함

나. 지방조직관리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안 제41조)

지방조직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및 관련 시스템 간 연계 요청 근거 마련

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개정 필요사항 반영(안 제13조, 제16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33조, 제34조, 별표1, 별표2, 별표4, 별표6)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인정 기준에 적용하는 인구 수에는 외국국적동포, 등록
외국인 수 포함(「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3.6.11.)에 따라, 강원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의 직급기준을 마련하고, '강원도' 명칭을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하는 등 개정 필요사항 정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4.4. ~ 5.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수를 합산한”으로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 동포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제13조제3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시·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제6항 후단 중 “광역시장·도지사”를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

치도지사”로 한다.

제21조 중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5항 중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4조제4항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지방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분류, 지방조직통계, 지방자치단체별 기구도 및 그 밖에 조직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조직관리정보”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지방조직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련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자료의 제공이나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조직관리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구설치기준의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증가하여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시·도의 기구설치기준과 제13조에 따른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할 때 그 인구수는 전년도말 현재 <u>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u> 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 개편 예정일의 바로 앞 분기말 현재 <u>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u> 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u><신 설></u>	제7조(기구설치기준의 적용) ① ----- -----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 ----- ----- ----- -----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 ----- -----. 1.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u>

③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가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서 해당 구간의 최소 인구수의 100분의 90에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 합치되도록 그 기구를 감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구는 전년도 각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③

③ 시·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

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6조(지방농촌진흥기구) ① ~

⑤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⑦ · ⑧ (생략)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
책정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
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
(장과 보조·보좌기관을 포함하
다)의 직급이 시·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
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
군·구에서는 4급 이상인 경우
에는 미리 시·도지사(특별자치
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
외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지방농촌진흥기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_____

_____. _____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
치도지사-----
-----.

⑦・⑧ (현행과 같음)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
책정 협의) -----

-----세종특별

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①·② (생략)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u>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u>)는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 ----- ----- <u>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u>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u>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u>)는 제외한다)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운영하여야 한다.	⑤ ----- ----- <u>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u> ----- ----- ----- -----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 ③ (생략)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u>특별자치시장 및</u>	④ ----- <u>세종특별자치시장</u>

의 구축·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분류, 지방조직통계, 지방자치단체별 기구도 및 그 밖에 조직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조직관리정보”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지방조직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련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이나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조직관리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

<u>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 부 장관이 정한다.</u>

[별지]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1】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현행			개정안																						
<table><tr><th colspan="2">구분</th><th>실·국·본부의 수</th></tr><tr><td rowspan="5">도</td><td>경기도</td><td>20개 이상 22개 이하</td></tr><tr><td>인구 300만 이상 400만 미만</td><td>11개 이상 13개 이하</td></tr><tr><td>인구 200만 이상 300만 미만</td><td>10개 이상 12개 이하</td></tr><tr><td>인구 100만 이상 200만 미만</td><td>9개 이상 11개 이하</td></tr><tr><td>인구 100만 미만</td><td>8개 이하</td></tr></table>			구분		실·국·본부의 수	도	경기도	20개 이상 22개 이하	인구 300만 이상 400만 미만	11개 이상 13개 이하	인구 200만 이상 300만 미만	10개 이상 12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200만 미만	9개 이상 11개 이하	인구 100만 미만	8개 이하	<table><tr><th colspan="2">구분</th><th>실·국·본부의 수</th></tr><tr><td>도·특별자치도</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table>			구분		실·국·본부의 수	도·특별자치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분		실·국·본부의 수																							
도	경기도	20개 이상 22개 이하																							
	인구 300만 이상 400만 미만	11개 이상 13개 이하																							
	인구 200만 이상 300만 미만	10개 이상 12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200만 미만	9개 이상 11개 이하																							
	인구 100만 미만	8개 이하																							
구분		실·국·본부의 수																							
도·특별자치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2】 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

현행					개정안				
1.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제10조제1항 관련)					1. (현행과 동일)				
구분	기획담당실장	재난안전담당실·국·본부장	실·국·본부장	소방담당본부장	구분	기획담당실장	재난안전담당실·국·본부장	실·국·본부장	소방담당본부장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국가공무원법」 제	2급 또는 3급 일반직	3급 일반직 지방공	소방감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경상남도	2조의2 에 따라 고위공 무원단 에 속하 는 일반 직공무 원	지방공 무원	무원	
--------------	--	-----------	----	--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	--	--	--	--

2. 본청의 담당관 · 과장(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기획 담 당 담당관	담당관	과장	소방담 당 과장
<u>강원도</u>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 무원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 무원 (2명, <u>감사업 무 및 비상기 확업무 수행</u>)	4급 일 반직 지 방공무 원	소방정
		4급 일 반직지 방공무원		

3. 직속기관

○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제18조제3항 관련)

2. (현행과 동일)

구분	기획 담 당 담당관	담당관	과장	소방담 당 과장
<u>강원특 별자치 도</u>	(현행과 같음)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 무원 (1명, <u>비상기 확업무 수행</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급 일 반직지 방공무원		

3. 직속기관

○ (현행과 동일)

기관명	장	과장	교수요원
<u>광역시·도</u>	3급 일반직지 방공무원	4급 일반 직지방공 무원	5급 일반 직지방공 무원

4. 합의제행정기관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 <신 설>

5.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직급기준

감사위원장	사무국장
정무직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4급 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

6. 세종특별자치시 읍장·면장·동장의 직
급기준

기관명	장	과장	교수요원
<u>광역시·도·특별자치도</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시·도감사위원회

구분	감사위원장	사무국장
세종특별 자치시	정무직 지방공 무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4급 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
강원특별 자치도	정무직 지방공 무원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4급 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

<삭 제>

5. (현행 제6호와 같음)

【별표4】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제15조제1항 관련)

현행	개정안
2.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2. (현행과 동일)

구분		의회사무처장	과장 또는 담당관
시·도	서울	1급 일반직	4급 일반직
	특별시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부산	2급 일반직	4급 일반직
	광역시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그 밖의 광역시· 특별자치 시 및 도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구분		의회사무처장	과장 또는 담당관
시·도	서울	(현행과 같 음)	(현행과 같 음)
	특별시		
	부산		
	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자치 시 및 도· 특별자치 도		

【별표6】 사업본부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기준 등(제20조제6항 관련)

현행					개정안				
1. 사업본부·사업소의 장 및 보조·보좌 기관의 직급기준					1. (현행과 같음)				
구분		장의 직급	부장	과장 또는 담당관	구분		장의 직 급	부장	과장 또는 담당관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	지역 본부	2급		4급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 특별자치 도	지역 본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사업 본부	3급 또는 4급	4급	5급		사업 본부	(현행과 같음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사업 소	4급 또는 5급		5급		사업 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비고					비고				
3. 서울특별시의 사업본부의 장은 별표 2 제1호에서 정한 실장·본부장 중 1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정원을					3. ----- ----- ----- -----				

제외한 범위에서 1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2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광역시·도의 사업본부의 장은 별표 2 제1호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실장·국장을 2급이나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정한 직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2급이나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의2. 광역시·도의 사업소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실·국·본부의 설치기준보다 1개 기구를 감축 운영하거나 별표 2 제1호에서 정한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담당관을 1개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소의 장을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담당관을 1개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소의 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출장소의 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기준

도 · 특별자치도

[illegible]

2. (현행과 동일)

구 분	장의 직급	국 장 또 는 국장급 담당관	과장 또는 담당관
도의 출장소	3급 또는 4급	4급	5급

구 분	장의 직급	국 장 또 는 국장급 담당관	과장 또는 담당관
<u>도· 특별자치</u> 도의 출장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17